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6

연금이슈

&

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

동향분석



제121호

2026. 07. 30.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김만수 부연구위원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주재윤 부연구위원

contents

I.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3
1. 문제제기	3
2. 분석 내용과 이슈	4
3. 분석개요	5
4. 분석결과	6
5. 시사점	12
II.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15
1. 들어가며	15
2.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 과정	16
3. 중복급여 조정 시 급여 선택 동향	18
4. 나가며	23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김만수
부연구위원

1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숙해가고 있음
 -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768만 명으로 월평균 지급액은 약 68만 원 수준이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70만 명에 이르고 2025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을 상회함
 - 공적연금 수급은 저소득층의 소득 분위 상승과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석상훈, 2010), 공적연금 수급자는 미수급자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김영숙·양영애, 2023)
- 다만, 공적연금이 성숙해 가는 가운데, 소득 현황을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임
 - 소득 현황을 장시간 살펴보면서 세부 소득항목별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상황임
 - 김수완·조유미(2006) 이후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이에 본 고에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집단별로 노인 소득 및 소득구성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전체 노인에 대한 소득을 살펴보고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소득구성과 소득 변화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 총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사업·금융·부동산·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세부 소득 항목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노인 소득 변화와 그 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변화 추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를 살펴본 뒤,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분석 내용과 이슈

■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차이

-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는 안정적 기여 이력에 기반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는 공적 급여의 대부분을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구조(권혁진·류재린, 2018)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집단은 두 제도의 결합으로 소득 안정성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비중과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장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급, 기타 집단으로 구분하고 오랜 시간에 걸친 공적연금 수급별 소득 현황과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소득총액만으로는 각 제도의 개별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구성별 구분을 통해 제도 효과를 측정해야 함(Lerman & Yitzhaki, 1994)

- 현재 노인 역시 근로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 소득총액만으로는 공적연금이 전체 소득 중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파악하기 힘들
-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으로 세분화된 소득 구성 분석을 통해 각 공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기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3

분석개요

■ 분석 목적 및 자료

- 본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소득구성 변화 분석을 위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격년으로 총 6개년도(2013, 2015, 2017, 2019, 2021, 2023)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함
 - 분석 대상은 만 66세 이상 노인이며,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4차(2013년)~10차(2023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함. 소득 정보는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 분석을 위해서는 만 66세 이상 노인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음
 - 소득 정보는 각 조사 전년도 기준(예: 2023년 조사 → 2022년 소득)으로 수집되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 및 소득구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분석 구성

- 분석은 만 66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격년을 통해 총 10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전체 노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적연금 수급 종류(국민연금 단독·기초연금 단독·동시수급·기타(직역연금, 무수급 등))에 대해서 총소득, 각 세부 소득항목에 대해 실증분석하고자 함
 - 소득액 분석 이후, 총소득 대비 근로사업 소득 등 세부 소득항목의 비중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
- 소득은 아래 <표 1>과 같이 총소득과 함께 근로사업·금융·부동산(임대)·국민연금·기초연금·동시수급·직역연금·기타공적이전·사적이전으로 구분되며 분석단위는 개인 단위임
 - 결측치는 제외하고 분석하여 분석결과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표 1> 소득 변수 내용

구분	내용
총 소 득	경상소득을 의미하며 아래 소득의 합
근 로 사 업	근로 및 사업소득액

금 용	예적금이자, 국공 채권 이자 등 금융관련 소득액
부동산(임대)	집세(월세로 받은 것), 임대료, 권리금 차액 등 주택, 토지, 비금융자산 등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받는 소득액
국 민 연 금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액
기 초 연 금	기초연금액
동 시 수 급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액과 동시수급액
직 역 연 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액
기타공적이전	국민, 기초, 동시, 직역연금을 제외한 기타공적이전 소득액
사 적 이 전	동거·비동거 가구로부터 받은 금액

4 분석결과

■ 분석대상 일반 현황

- 전체 분석 대상은 2013년 3,802명에서 2023년 3,712명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함
 -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약 60% 내외를 유지하며 구조적 특성이 지속됨
 - 가구유형 면에서는 단독가구 비중이 2013년 22.7%에서 2023년 28.1%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2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공적연금 수급 현황에서는 동시수급자 비율이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 비중도 8.4%에서 12.2%로 높아졌음
 - 패널데이터 특성상 이탈하는 표본이 발생하여 표본 수가 낮아질 수 있음

<표 2> 분석대상 현황(단위: 명,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전체		3,802 (100.0)	3,888 (100.0)	3,909 (100.0)	3,871 (100.0)	3,752 (100.0)	3,712 (100.0)
성별	여성	2,284 (60.1)	2,323 (59.7)	2,359 (60.3)	2,352 (60.8)	2,274 (60.6)	2,258 (60.8)
	남성	1,518 (39.9)	1,565 (40.3)	1,550 (39.7)	1,519 (39.2)	1,478 (39.4)	1,454 (39.2)
연령	66세~75세	2,361 (62.1)	2,244 (57.7)	2,117 (54.2)	1,941 (50.1)	1,798 (47.9)	1,791 (48.2)
	76세~85세	1,245 (32.7)	1,420 (36.5)	1,522 (38.9)	1,615 (41.7)	1,601 (42.7)	1,510 (40.7)
	86세~	196 (5.2)	224 (5.8)	270 (6.9)	315 (8.1)	353 (9.4)	411 (11.1)
가구 유형	단독가구	863 (22.7)	908 (23.4)	958 (24.5)	1,000 (25.8)	1,026 (27.3)	1,044 (28.1)
	2인 이상 가구	2,939 (77.3)	2,980 (76.6)	2,951 (75.5)	2,871 (74.2)	2,726 (72.7)	2,668 (71.9)
소득 계층	소득1분위	951 (25.0)	973 (25.0)	979 (25.0)	980 (25.3)	943 (25.1)	928 (25.0)
	소득2분위	951 (25.0)	971 (25.0)	986 (25.2)	958 (24.7)	933 (24.9)	931 (25.1)
	소득3분위	950 (25.0)	972 (25.0)	967 (24.7)	966 (25.0)	939 (25.0)	925 (24.9)
	소득4분위	950 (25.0)	972 (25.0)	977 (25.0)	967 (25.0)	937 (25.0)	928 (25.0)
공적 연금 수급	국민연금	318 (8.4)	373 (9.6)	401 (10.3)	453 (11.7)	422 (11.2)	453 (12.2)
	기초연금	2,273 (59.8)	2,219 (57.1)	2,123 (54.3)	2,007 (51.8)	1,887 (50.3)	1,761 (47.4)
	동시수급	486 (12.8)	565 (14.5)	639 (16.3)	678 (17.5)	762 (20.3)	873 (23.5)
	기타 (무수급, 역연금 등)	725 (19.1)	731 (18.8)	746 (19.1)	733 (18.9)	681 (18.2)	625 (16.8)

■ 전체노인 소득 및 소득 구성

- 공적연금 수급 중심의 소득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노인 소득을 살펴보면 분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음. 총소득은 2013년 7,748천 원에서 2023년 13,884천 원으로 약 79.2% 증가하였으며, 공적연금 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급)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동시수급은 같은 기간 299.7% 증가율을 보여 국민연금 177.5%, 기초연금 156.2% 보다 큰 증가세를 보였음
 -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증가율은 3.9%에 그쳐 노인 소득에서 사적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소득구성 면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동시수급)의 합계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20.9%에서 12.1%로 하락함
 - 이는 과거 가족 중심의 사적 지원에 의존하던 노인 소득 구조가 공적연금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 전체 노인 소득 현황 및 10년 대비 증가율(단위: 천 원,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13년-23년 증가율
총 소 득	7,748	9,021	9,946	10,756	12,426	13,884	(79.2)
근 로 사 업	2,615	2,992	3,209	3,400	3,827	5,152	(97.0)
금 용	200	147	160	152	180	283	(41.4)
부동산(임대)	776	1,074	1,001	1,121	1,248	960	(23.7)
국 민 연 금	271	363	429	543	564	753	(177.5)
기 초 연 금	594	877	1,163	1,208	1,370	1,521	(156.2)
동 시 수 급	410	589	796	939	1,245	1,639	(299.7)
직 역 연 금	1,039	1,190	1,206	1,310	1,462	1,406	(35.4)
기타공적이전	223	266	296	337	788	485	(117.4)
사 적 이 전	1,618	1,520	1,686	1,746	1,730	1,682	(3.9)

<표 4> 전체 노인 소득구성 비교(단위: %)

구분	2013년	2023년
근로사업	33.8	37.1
금융	2.6	2.0
부동산(임대)	10.0	6.9
국민연금	3.5	5.4
기초연금	7.7	11.0
동시수급	5.3	11.8
직역연금	13.4	10.1
기타공적이전	2.9	3.5
사적이전	20.9	12.1

■ 공적연금 수급별 노인 소득 및 소득구성

- 공적연금 수급별, 총소득 규모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3.1배, 동시수급자의 1.7배, 기타수급자의 1.5배 수준으로 나타났음
 -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별개로 근로사업 소득이 높으며, 다른 공적연금 수급 집단보다 금융 및 부동산 소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비중이 2013년 19.5%에서 2023년 23.3%로 확대되어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 하지만, 여전히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56.9%로 가장 높아 근로사업 등을 통한 소득과 공적연금이 결합된 소득 구조를 보임
- 2023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는 총소득이 8,406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초연금 비중이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크게 상승하여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집중됨
 - 사적이전소득 비중도 36.5%에서 24.7%로 감소하였으나 다른 집단보다 여전히 높음

- 소득구성에서 동시수급자는 2013년 32.4%에서 2023년 44.7%로 증가하여 기초연금 비중 만큼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그만큼 동시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15.1%에서 8.5%로 하락하여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가족 의존도를 감소 시킨다고 볼 수 있음
- 기타 집단, 즉 무수급이거나 직역연금을 받는 집단에서는 직역연금의 비중이 다른 공적연금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공적연금의 소득 내 비중이 커졌으며 그 금액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공적연금 수급별 노인 소득 현황 및 10년 대비 증가율(단위: 천 원,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13년-23년 증가율
국민 연금	총 소 득	16,656	19,187	19,927	20,235	24,095	26,478	(59.0)
	근 로 사 업	7,808	9,488	9,073	9,626	11,491	15,070	(93.0)
	금 용	631	413	711	445	498	649	(2.9)
	부동산(임대)	3,363	4,027	4,158	3,485	4,503	2,525	(-39.3)
	국 민 연 금	3,243	3,789	4,180	4,642	5,024	6,169	(90.2)
	기 초 연 금	0	0	0	0	0	0	
	동 시 수 급	0	0	0	0	0	0	
	직 역 연 금	417	297	223	314	440	481	(15.4)
	기타공적이전	151	325	386	458	1,055	427	(182.4)
	사 적 이 전	1,042	848	1,196	1,265	1,058	1,157	(11.0)
기초 연금	총 소 득	4,934	5,468	6,220	6,768	7,703	8,406	(70.4)
	근 로 사 업	1,491	1,524	1,696	1,710	1,916	2,222	(49.0)
	금 용	78	58	47	48	65	134	(71.5)

	부동산(임대)	254	417	220	388	267	261	(2.8)
	국 민 연 금	0	0	0	0	0	0	
	기 초 연 금	993	1,536	2,141	2,330	2,721	3,205	(222.7)
	동 시 수 급	0	0	0	0	0	0	
	직 역 연 금	138	0	3	36	30	41	(-70.3)
	기타공적이전	179	206	228	265	688	466	(159.9)
	사 적 이 전	1,801	1,725	1,884	1,993	2,001	2,076	(15.2)
동시 수급	총 소 득	9,897	11,280	12,462	12,818	15,004	15,610	(57.7)
	근 로 사 업	4,624	5,071	5,257	5,226	5,429	6,511	(40.8)
	금 용	169	128	96	118	165	223	(31.6)
	부동산(임대)	218	455	451	356	831	354	(62.0)
	국 민 연 금	0	0	0	0	0	0	
	기 초 연 금	0	0	0	0	0	0	
	동 시 수 급	3,203	4,057	4,870	5,360	6,119	6,973	(117.7)
	직 역 연 금	28	0	0	0	8	13	(-54.3)
	기타공적이전	144	100	106	120	670	209	(44.7)
	사 적 이 전	1,497	1,469	1,682	1,638	1,775	1,329	(-11.2)
기타 (무수급, 직역수급 등)	총 소 득	11,219	12,876	13,029	13,912	15,397	17,777	(58.4)
	근 로 사 업	2,514	2,531	2,608	2,497	2,585	4,324	(72.0)
	금 용	416	295	241	288	321	526	(26.2)
	부동산(임대)	1,651	2,042	1,996	2,375	2,424	2,642	(60.0)
	국 민 연 금	0	0	0	0	0	0	
	기 초 연 금	0	0	0	0	0	0	
	동 시 수 급	0	0	0	0	0	0	
	직 역 연 금	4,815	6,180	6,191	6,629	7,716	7,873	(63.5)
	기타공적이전	445	548	604	657	1,033	966	(117.2)
	사 적 이 전	1,378	1,281	1,390	1,466	1,340	1,446	(4.9)

<표 6> 공적연금 수급별 소득구성 비교(단위: %)

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급		기타(무수급, 직역수급 등)	
	2013년	2023년	2013년	2023년	2013년	2023년	2013년	2023년
근로사업	46.9	56.9	30.2	26.4	46.7	41.7	22.4	24.3
금융	3.8	2.5	1.6	1.6	1.7	1.4	3.7	3.0
부동산(임대)	20.2	9.5	5.1	3.1	2.2	2.3	14.7	14.9
국민연금	19.5	23.3	0.0	0.0	0.0	0.0	0.0	0.0
기초연금	0.0	0.0	20.1	38.1	0.0	0.0	0.0	0.0
동시수급	0.0	0.0	0.0	0.0	32.4	44.7	0.0	0.0
직역연금	2.5	1.8	2.8	0.5	0.3	0.1	42.9	44.3
기타공적이전	0.9	1.6	3.6	5.5	1.5	1.3	4.0	5.4
사적이전	6.3	4.4	36.5	24.7	15.1	8.5	12.3	8.1

5 시사점

■ 지난 10년간 만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국민연금의 경우 2.8배, 기초연금의 경우 2.6배, 동시수급 경우 3.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만큼 공적연금 성숙과 함께 노인 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구성에 있어서도 공적연금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에는 각각 국민연금의 경우 3.5%, 기초연금 7.7%, 동시수급 5.3%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3에는 총소득에서 국민연금이 5.4%, 기초연금이 11.0%, 동시수급이 11.8% 비중을 차지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짐

-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집단에서 공적 연금이 소득 비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 소득 구성 가운데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소득 비중이 확대되는 동시에 사적·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남

- 이는 노인 소득 기반이 가족 부양 의존에서 공적 소득보장 체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적연금 제도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동시수급자 비율이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급 급여액도 소득 내에서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 성숙화에 따라 향후 동시수급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두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적연금이 성숙하면서 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으며 절대 금액도 타 공적연금 수급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전체 노인의 총소득 평균이 13,884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26,478천 원, 동시수급자의 경우 15,610천 원, 기타의 경우 17,777천 원으로 확인되었음. 반면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집단의 경우 8,406천 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에 수급에 따른 총소득의 증가도 확인되며, 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비중 상승 폭도 다른 수급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그만큼,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집단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초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여전히 타공적연금 수급 집단에 비하면 총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권혁진·류재린. (201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공공사회연구, 8(1): 38-92
- 김영숙·양영애. (2023). 공적연금 수급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5(2): 95-108
- 김수완·조유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가구유형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학, 29: 5-37.
- 석상훈. (2010).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 335-352.
- 이성림. (2015).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과 소비 격차. 한국인구학, 38(2): 85-111
- 이채정·권혁주. (2016)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노인의 생활비 지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8(3): 365-388
- Lerman, R. I., & Yitzhaki, S. (1994). Effect of Marginal Changes in Income Sources on U.S. Income Inequality. Public Finance Review, 22(4): 403-417.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주재운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따라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적절한 수준에서 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되,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중복급여 조정의 기본 틀은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음. 특히, 2007년에는 제도 명칭이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변경되고 미선택 유족연금에 대한 추가지급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중복지급률이 상향되는 등 정비되어 왔음
- 한편,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연금 수급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중복급여 조정 시 수급권자가 어떤 급여를 선택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연금급여 간 중복이 발생했을 때 수급권자의 선택 행태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분석 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상호 간 중복 발생 케이스로 한정하며, 반환일시금이 관여된 케이스는 일시금이라는 급여 성격상 연속적인 선택 행태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함

2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 과정

- 중복급여 조정 대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며(「국민연금법」 제56조), 기본 원칙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는 것임
 - 이때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추후 선택한 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정지 중이던 다른 급여가 지급됨. 다만, 선택한 급여가 수급권자의 귀책사유로 정지되면 정지 중이던 다른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한편,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반환일시금이면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함
 - 사망일시금은 선·후발을 불문하고 다른 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다른 급여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급여의 종별과 관계없이 두 급여 모두 지급하는 등 중복급여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중복급여 조정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음
 - 1997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후발급여가 발생한 경우를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01년에는 장애의 호전·악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중복급여 재조정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음

- 2003년에는 연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중복급여의 재조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미선택 급여의 지급정지 해제사유를 확대하였음
- 2007년에는 제도 명칭이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중복급여 조정 내용도 대폭 변경되었음
 - 종전에는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20%를, 반환일시금이면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간에는 중복급여 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였음
 - 이후 2016년에는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에 대한 중복지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추가지급 장치는 수급권자의 급여 선택과 관련되는 요인 중 하나로, 선·후발급여의 종류에 따른 현행 중복급여 조정 구조는 <표 2-1>과 같음

<표 2-1> 선·후발급여의 종류에 따른 현행 중복급여 조정 구조

선발급여	후발급여	지급할 급여
노령(분할)연금	장애연금	선택한 하나의 급여
	유족연금	‘노령(분할)연금+유족연금액의30%’ 또는 유족연금 중 선택
장 애 연 금	노령(분할)연금	선택한 하나의 급여
	유족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액의 30%’ 또는 유족연금 중 선택
유 족 연 금	노령(분할)연금	‘노령(분할)연금+유족연금액의 30%’ 또는 유족연금 중 선택
	장애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액의 30%’ 또는 유족연금 중 선택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중복급여 조정 시 급여 선택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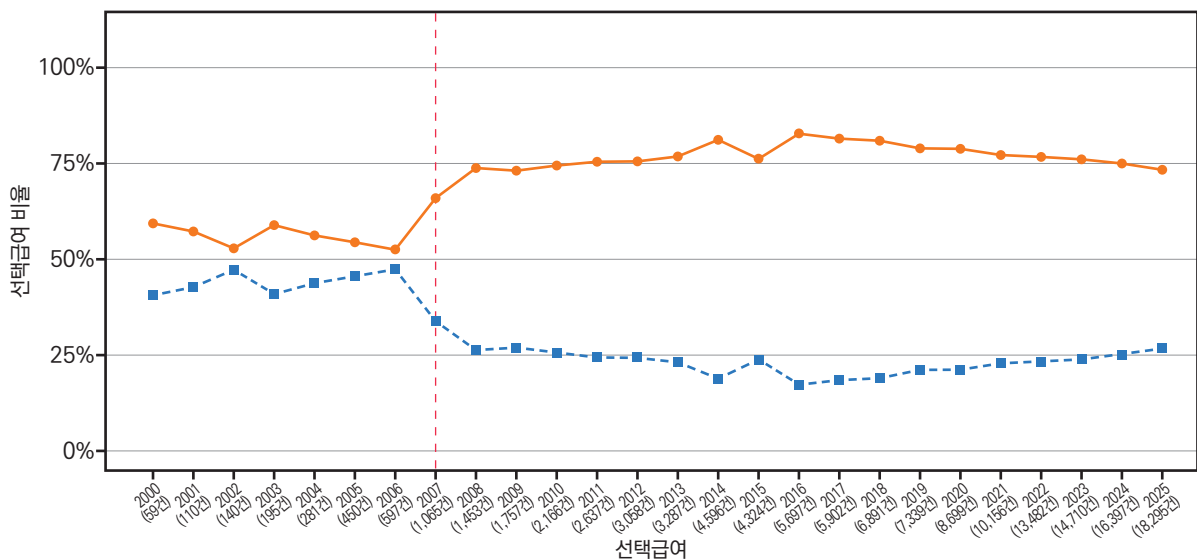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노령·장애·유족연금 상호 간 중복급여가 발생한 케이스를 선발급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급여 선택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봄

- 분석 기간은 중복급여 조정 건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일부 케이스에서는 발생 건수가 적은 연도가 있어 연도별 비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한편, 노령연금이 후발급여로 발생하는 케이스(유족→노령, 장애→노령)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된 연도(2013년, 2018년, 2023년)를 전후로 발생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됨

■ 노령연금 수급 중 배우자 등 유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2007년 제도 개정을 전후로 선택 행태가 뚜렷하게 구분됨([그림 3-1] 참조)

- 2007년 이전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50~60% 수준이었으나, 2007년 이후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약 75% 수준으로 상승하여 유지되고 있음
 - 이는 2007년 개정으로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일정 비율(20%, 2016년 이후 30%)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제도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그림 3-1] 선발:노령연금 → 후발: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선택급여 비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노령연금 수급 중 장애연금이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시기에 따라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등락하는 양상이 확인됨([그림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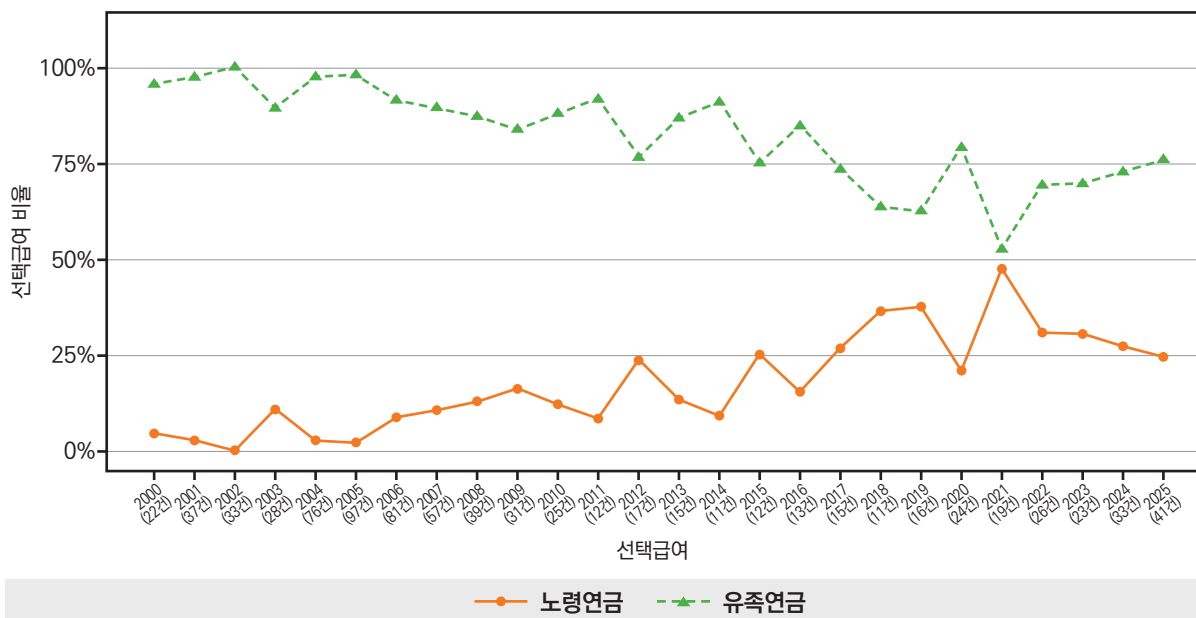
○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시에는 두 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본 케이스에서 선발급여는 조기노령연금이나 가입기간이 길지 않은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등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러한 경우 장애연금액이 노령연금액보다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특히, 2009년 이전에는 특례노령연금이 선발급여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후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선발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본 케이스는 발생 건수가 적어 연도별 비율의 변동이 큰 편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 선발:노령연금 → 후발: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선택급여 비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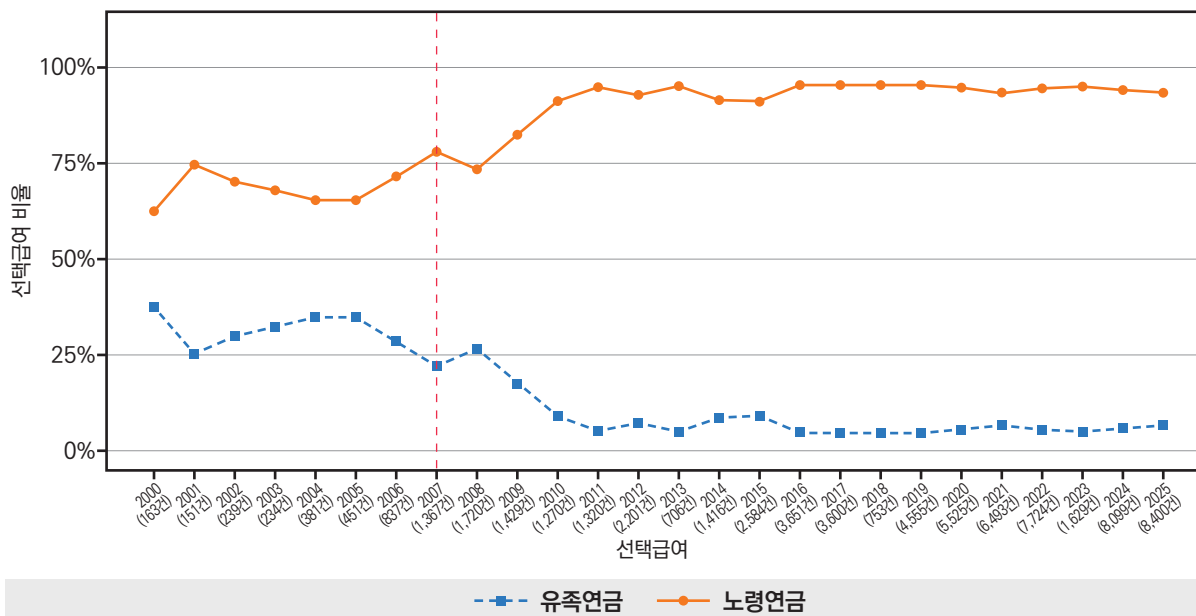
■ 유족연금 수급 중 본인의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 2007년 이후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지며 분석 대상 케이스 중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이 확인됨([그림 3-3] 참조)

○ 2007년 이전에는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60~70% 수준에서 등락하였으나, 2007년 이후 노령연금 선택이 크게 높아져 대부분의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있음

-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일정 비율(20%, 2016년 이후 30%)을 함께 받게 되는 제도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노령연금이 후발급여로 발생하는 케이스인 만큼,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된 연도에는 전년 대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양상도 함께 관찰됨

[그림 3-3] 선발:유족연금 → 후발:노령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선택급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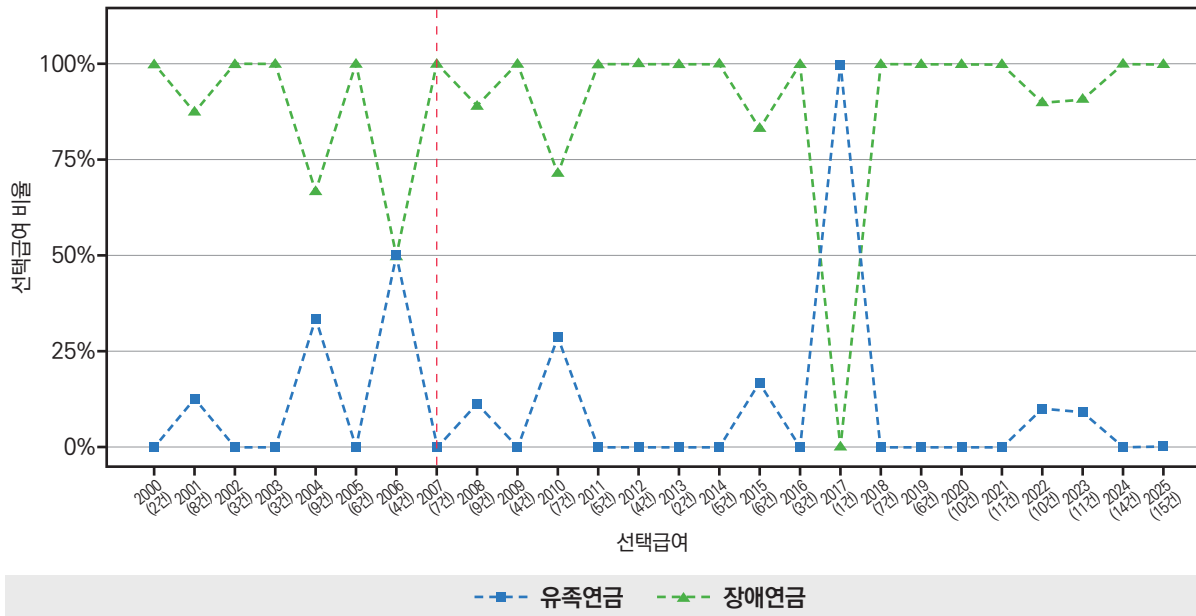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유족연금 수급 중 장애연금이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나, 발생 건수가 매우 적어 연도별 변동이 불안정하므로 경향성 해석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그림 3-4] 참조)

○ 앞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일정 비율(20%, 2016년 이후 30%)을 함께 받는 제도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그림 3-4] 선발:유족연금 → 후발: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선택급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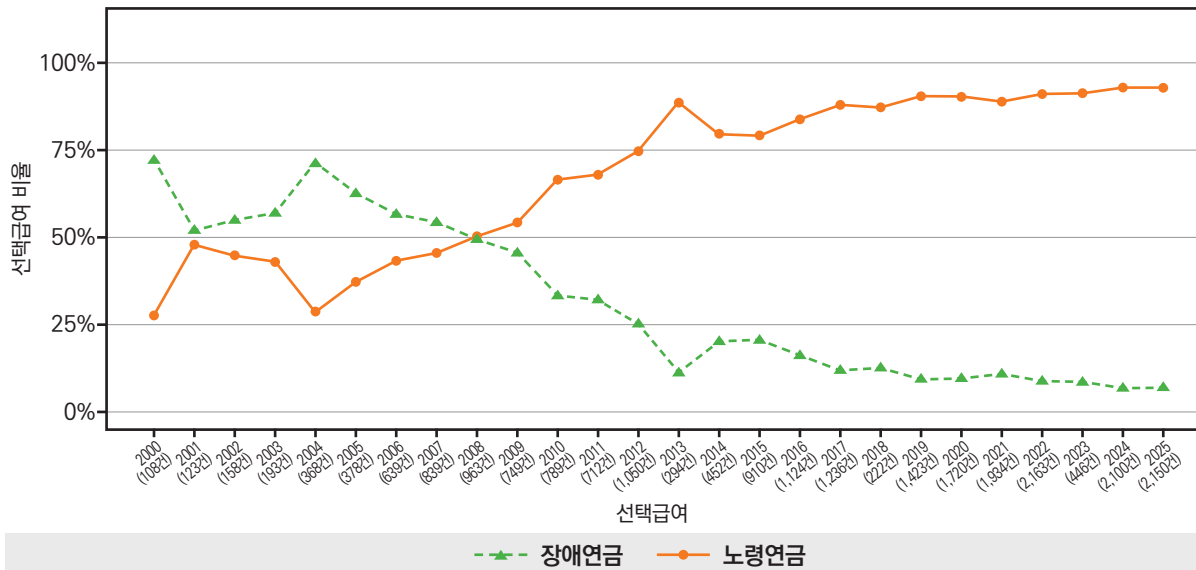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장애연금 수급 중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장애연금 선택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높아지며 두 급여 간 선택 비율이 역전되는 양상이 확인됨 ([그림 3-5] 참조)

-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시에는 두 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2008년부터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제도 성숙에 따라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노령연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이 노령연금 선택 비율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장애연금 수급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가입기간 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령연금액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케이스는 노령연금이 후발급여로 발생하므로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도를 전후로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양상도 함께 관찰됨

[그림 3-5] 선발:장애연금 → 후발:노령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선택급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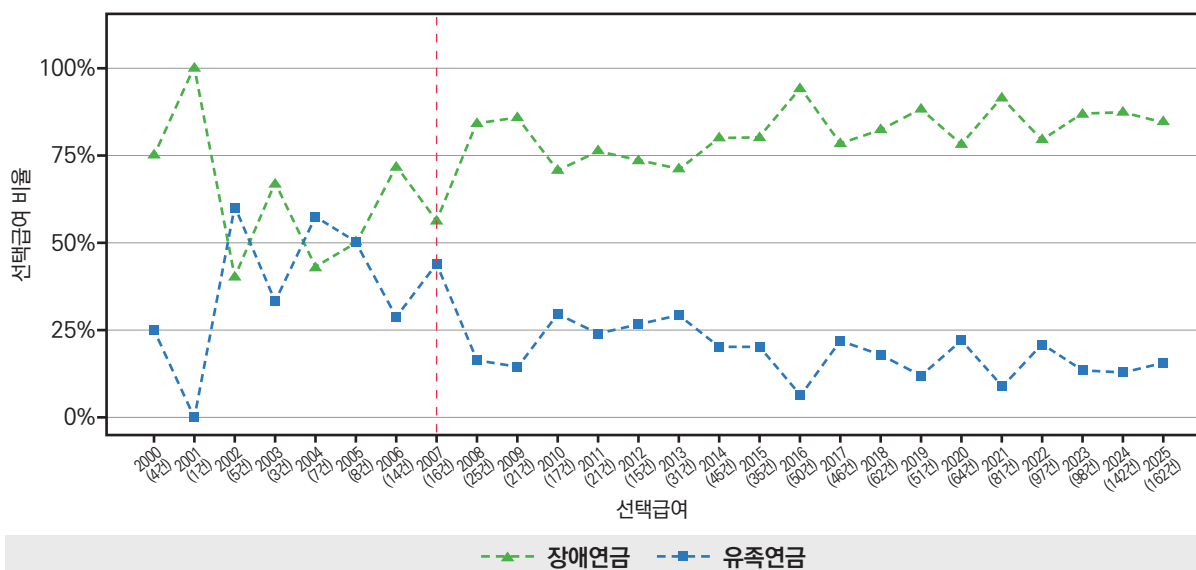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장애연금 수급 중 유족연금이 발생한 경우, 2007년 이후 장애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80~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됨([그림 3-6] 참조)

-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일정 비율(20%, 2016년 이후 30%)을 함께 받게 되는 제도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케이스는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연도별 비율에 일부 변동이 나타나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3-6] 선발:장애연금 → 후발: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시 선택급여 비율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나가며

-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노령·장애·유족연금 상호 간 중복급여 조정 시 수급권자의 급여 선택 행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발생 건수가 적은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2007년 법 개정(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에 대한 추가지급 제도화)을 기점으로 케이스별 선택 비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이 확인됨
 - 특히 유족연금이 관여된 케이스에서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미선택 유족연금에 대한 추가지급이 도입된 2007년 이후 나타난 양상임
- 향후 선택 비율은 현행 제도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큰 변동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연금 성숙에 따른 급여액 변화나 관련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선택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장애연금이 선발급여이고 후발로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케이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제도 성숙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선택 행태가 변화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중복급여 선택 동향은 제도 변화와 연금 성숙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연금이슈 & 동향분석(Pension Issue & Trends Analysis)은

연금제도 및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결과 제공을 통해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공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http://institute.nps.or.kr>) - 연구 자료실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한정림

발행처 국민연금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만성동)

Tel 063. 713. 6776

Fax 063. 900. 3250